

의안번호	2126263
의 퇴 인	서삼석의원
회 답 일	2024. 1. 26.
추 계 번호	24B0039
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6조의3 신설 (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)	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(이하 “<u>해양오염방지설비</u>”라 함)를 <u>설치</u>하여야 함(제1항) 1. 제38조의 오염물질저장시설 2.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(비축을 포함한다) 시설 3. 선박의 건조·수리 또는 해체 시설 4. 시멘트·석탄·사료·곡물·고철·광석·목재·토사의 하역시설 5.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6.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	의무규정
2	안 제36조의4 신설 (해양오염방지설비의 안전점검)	<u>해양수산부장관은</u>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<u>안전점검</u>을 실시하고, 안전점검 결과 수리·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<u>시설의 개선</u> 등을 권고하여야 함(제1항) <u>해양수산부장관은</u>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<u>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</u>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·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6조의3 신설(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6조의4 신설(해양오염방지설비의 안전점검)	

2. 상세 사유

가. 개요

□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 관리 현황

- **(해양시설)**¹⁾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·비축시설, 오염물질저장시설, 해상 관광시설 등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·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
 - ※ 우리나라 해양시설 현황은 [참고자료]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 관리 현황 참고
- **(준수사항)** 해양시설 소유자에 대한 해양오염방지 준수사항 부여
 - 해양시설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 소유자에 대해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비치 및 기록 의무 부여(법 제34조)
 -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가 가능토록 사전에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작성 및 승인(법 제35조)
 - 오염방제 자재에 대한 상시 비치 의무 부여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자체 임명(법 제36조, 법 제66조)하도록 하는 등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의무 부여
 -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반기별 1회 자체 안전점검 실시(법 제36조의2)
- **(관련 예산)**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해양오염방지 예산 현황

[표 1] 해양오염방지 관련 예산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2020	2021	2022	2023	2024
해양오염사고방지 (1036-306) -해양오염방지역 량강화	오염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해양시설 등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	1,662	1,812	1,812	1,812	1,790
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 수거·처리 (5067-300) -폐유 사업	오염물질 불법 해양투기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을 통한 선저폐수 등의 수거·처리	6,049	5,089	5,379	5,926	5,720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1. 1) 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7. “해양시설”이라 함은 해역(「항만법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·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나.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(안 제36조의3 신설)

□ 개정안은 특정 해양시설 소유자에게 일정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, 해양시설의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해양시설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○ 설치의무 대상시설(안 제36조의3제1항)

- 법 제38조²⁾의 오염물질저장시설
-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(비축 포함) 시설
- 선박의 건조·수리 또는 해체 시설
- 시멘트·석탄·사료·곡물·고철·광석·목재·토사의 하역시설
-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
-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○ 개정안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해양시설에 설치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, 규모 및 단가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함

$$\begin{aligned} \text{추가재정소요} &= \sum_{i,j,t} (\text{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비용})_{i,j,t} \\ &= \sum_{i,j,t} (\text{유형별 해양시설 수}_i \times \text{유형별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 단가}_j)_t \end{aligned}$$

- t 는 추계기간 5년
- i 는 유형별 해양시설 수(오염물질저장시설, 기름·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, 선박건조 시설 등)
- j 는 유형별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단가(배출허용기준 이하 처리시설, 타법령 규정 충족 시설, 폐수 혼합 방지 분리·집수시설, 오염물질의 고체화 시설, 폐수 차단·저류(貯留) 시설 등)

□ 그러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시설 유형별로 설치되는 해양오염방지설비가 상이하고, 각 설비의 구체적인 규모 및 단가 등 추계에 필요한 자료가 부재하며, 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³⁾

2) 법 제38조(오염물질저장시설) ①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(이하 “오염물질저장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~ ③ (생략)

3) 안 제36조의3(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) ②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되어 있어,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시설 유형별 해양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사례는 없음

다.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안전점검(안 제36조의4 신설)

□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·보수 개선 권고를 이행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예를 들어, 해양오염방지설비 수리·보수 지원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수리·보수 대상 해양시설 수, 유형별 해양오염방지설비 수리·보수 단가, 지원을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함

$$\begin{aligned} \text{추가재정소요} &= \sum_{i,j,t} (\text{해양오염방지설비 수리·보수 지원비용})_{i,j,t} \\ &= \sum_{i,j,t} (\text{수리·보수 대상 해양시설 수}_i \times \text{유형별 해양오염방지설비} \\ &\quad \text{수리·보수 단가}_j \times \text{지원율})_t \end{aligned}$$

- t 는 추계기간 5년
- i 는 수리·보수 대상 해양시설 수(오염물질저장시설, 기름·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, 선박건조시설 등)
 - * 단, 안전점검 결과 수리·보수 개선 권고가 필요한 시설
- j 는 유형별 해양오염방지설비 수리·보수 단가(배출허용기준 이하 처리시설, 타법령 규정 충족 시설, 폐수 혼합 방지 분리·집수시설, 오염물질의 고체화 시설, 폐수 차단·저류(貯留) 시설 등)

□ 그런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설비 안전점검 및 수리·보수

-
1.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
 2.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
 3. 폐수가 해양으로 유출·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
 - 가. 다른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·집수(集水) 시설
 - 나. 폐수 중 해양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
 - 다. 해양시설의 고장,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·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해양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·저류(貯留) 시설

지원기준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, 향후 수리·보수 개선 권고 이행대상 해양시설 및 해양오염방지설비 수, 각 방지설비별 수리·보수 단가 및 지원율 등 추계에 필요한 자료가 부재하여,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]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 관리 현황

(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□ 해양시설 현황

-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33조에 따라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함
 - －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
 - － 그 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

<해양시설 현황>

(2023.6. 기준, 단위: 개소)

해양시설의 종류		시설 수 (관리주체별)			
		총계	국가	지자체	민간
1. 기름, 유해액체물질, 폐기물, 그 밖의 물건의 공급·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·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	가.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·비축 시설	379	45	17	317
	나. 법 제38조의 오염물질저장시설	14	14	—	—
	다.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, 해체시설	193	6	—	187
	라. 멘트·석탄·사료·곡물·고철·광석·목재·토사의 하역시설	15	—	—	15
	마.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 시설	3	—	1	2
	소 계	604	65	18	521
2. 해양레저, 관광, 주거, 해수이용,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·배치·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	가. 연면적 100㎡ 이상의 해상관광시설, 주거시설(호텔·콘도), 음식점(「선박안전법」 상 선박은 제외)	4	—	1	3
	나. 환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·배수시설 (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지름의 합)	493	—	34	459
	다. 유어장	109	—	4	105
	라. 그밖의 시설 (해상송전철탑, 해저광케이블, 해상부유구조물)	51	—	29	22
	소 계	657	—	68	589
3.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·배치·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	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	2	2	—	—
	소 계	2	2	—	—
합 계		1,263	67	86	1,110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□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, 오염물질 등 처리 방법

-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,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전문위탁 처리업체에서 처리
 - 다만, 오염물질 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하여 해양에 배출하는 등 조건부로 허용
- * 기름의 경우 유창청소업자 등에게 위탁하거나, 유분 성분을 100만분의 15 이하로 하여 배출이 가능함. 유해액체물질의 경우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함.